2026. 1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AI 개발 목적 복제 예외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 제한 도입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발표 배경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2월 13일 관보에 개정 저작권법(국왕령 제M/169호, 이하 '개정법')을 게재하였고, 개정법은 게재 후 180일이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제61조). 개정법은 2003년 구법(국왕령 제M/41호)을 대체한다(제59조). 개정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s, 이하 '시행규정[1]')은 사우디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SAIP')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어 7월 31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승인 결정은 시행규정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개정법은 인공지능(AI) 개발, 온라인 플랫폼,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허락을 직접 규율하고 집행 수단을 보강하였다.

〈표〉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의 주요 변경 사항

항목	종전(구법)	개정법(2026년)
징역 상한	6개월(제22조)	1년(제47조)
벌금 상한	25만 리얄(제22조)	100만 리얄(제47조)
재범	상한을 2배로 '할 수 있음'(제22조 제2항)	상한을 2배로 '함'(제48조)
형사 절차	위반심사위원회가 처분(제25조)하되 징역·10만 리얄 초과 벌금 등은 이사회를 거쳐 Board of Grievances에 회부(제22조 제3항)	검찰이 수사·기소(제46조), SAIP 합의(제56조)
AI 개발 목적 복제	–	제26조 제4항, 시행규정 제30조
플랫폼 책임 제한	–	제49조, 시행규정 제83조~제89조
등록	등록에 따른 소유권 추정 규정 없음	소유권 추정, 반증 가능(제42조)

2. 주요내용

1) 권리 체계

개정법 제1조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인터넷

1)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정하는 하위규정으로, 우리 법제의 시행령과는 발령 주체와 법형식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콘텐츠 제공자,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등을 정의한다. 방송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는 유·무선 방송을 통한 공중송신과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우리 저작권법의 '전송'과 유사한 개념)이 포함된다(제9조 제1항).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보호되며, 시청각저작물은 최초 공개 또는 완성 후 50년, 응용미술저작물은 최초 발행 후 25년, 방송사업자는 20년,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50년 보호된다. 보호기간의 기산은 사망·완성·공개·발행·방송·실연 등 기산 사유가 생긴 다음 해 초부터 계산한다(제22조·제23조). 시행규정은 꾸란 낭송과 아잔(기도 시간 알림)을 하는 자도 실연자로 본다(제8조).

2) AI 개발 목적 복제 예외(개정법 제26조 제4항, 시행규정 제30조)

개정법 제26조 제4항은 AI 제품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원본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과 보상 없이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표되고 원본 복제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며, 복제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6조~제36조의 예외에는 공통으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제37조 제1항). 시행규정 제30조는 다음 조건을 더한다. ① 복제와 분석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며 재발행·배포·직접적 상업 이용으로 나아갈 수 없다. ② 전적으로 상업적인 맥락(purely commercial context)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이용이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비실질적이거나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개발자는 이용한 저작물의 종류·출처·목적·이용일을 기록하고, 그 이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④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저작물로 수익을 얻을 기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제외) 저작물의 개작·재발행·공중 제공이나 불필요한 최종 제품 포함이 금지된다. ⑥ 독립된 보호를 받는 요소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해석이 열려 있는 부분도 있다. Latham & Watkins는 ②의 제한이 AI 산출물이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재현하는 경우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넓게 읽으면 상업적 AI 개발자가 예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2] 기록의 상세 수준과 보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학습 데이터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남지 않는 모델이 ⑤의 '최종 제품 포함'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개정법과 시행규정은 모두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3)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조건부 책임 제한(개정법 제49조, 시행규정 제83조~제89조)

개정법 제49조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① 데이터의 전달·저장·표시를 순수하게 기술적·자동적으로

2) Latham & Watkins, "Saudi Arabia's New Copyright Regulations: What AI Companies Should Know", 2026. 9. 15., https://www.lw.com/en/insights/2026/09/Saudi%20Arabia%20New%20Copyright%20Regulations%20What%20AI%20Companies%20Should%20Know

처리하고, ②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며(기술적으로 필요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수정은 예외), ③ 침해를 알지 못하고, ④ 알게 된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며, ⑤ 권리자가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춘 때에는 이용자의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시행규정은 책임을 지지 않는 6개 요건을 정한다. 침해를 알았거나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받은 때 중 먼저 도래한 때부터 근무시간 기준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것, 침해 행위로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것, 위반 이용자의 계정을 종료·제한하는 방침을 서면으로 둘 것, SAIP가 정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지킬 것 등이 포함된다(제85조). 이용자는 삭제가 착오이거나 콘텐츠가 잘못 특정된 결과라는 취지의 반대 통지를 할 수 있고, 제공자는 반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안에 최초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요건을 갖춘 신고에 따른 삭제에는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84조). SAIP의 일시적 차단은 제공자가 신고에 응하지 않거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침해가 반복·지속되는 경우에 한한 예외적 수단이다(제88조·제89조).

4)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허락과 업무상 저작물(개정법 제12조·제18조)

컴퓨터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데이터베이스의 구매자와 이용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포장·내려받기·저장 시 표시된 이용허락 조건에 구속된다(개정법 제12조). 시행규정은 이용허락 조건에 범위·기간·목적·중요한 제한을 밝히도록 하고, 법이 보장한 권리의 포기를 요구하거나 법정 예외에 따른 적법한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사후 변경은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야 적용된다고 정한다(제29조).

개정법 제18조는 근로자가 업무 중 창작한 저작물(업무상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정한다. 사용자의 활동·업무와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돌아가고(제1항, 제7조 제2항의 예외), 타인을 위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약정이 없으면 저작자에게 돌아가며(제2항),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근로자에게 있다(제3항). 시행규정 제15조는 '업무와 관련된' 저작물을 직무 수행, 계약상 의무 이행, 사용자의 지시나 자원 사용으로 창작된 경우로 풀이하고(제1항), 근로관계가 없는 자와의 특약에 따라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에게 남기되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귀속한다고 정한다(제2항). 두 규정은 약정이 없는 위탁 창작물의 재산적 권리 귀속에 관해 다른 결론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개정법 제18조 제2항은 저작자, 시행규정 제15조 제2항은 계약 상대방). 양자의 적용 범위와 관계는 향후 해석·집행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집행 강화

개정법 제47조는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권리관리정보의 악의적 제거, 위조·불법 복제물의 상업적 수입·보관 등 9개 침해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 리얄(한화 약 3억5천5백만 원) 이하를 정하며, 둘을 병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구법(제22조)은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25만 리얄(한화 약 8,880만 원) 이하였으므로 상한이 각각 2배·4배가 되었다.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사면 후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상한이 2배가 되어 징역 2년, 벌금 200만 리얄(한화 약 7억천만 원)에 이른다(제48조). 구법은 재범 시 상한을 2배로 '할 수 있다'고만 정했다.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맡고(제46조), SAIP의 단속 공무원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위반 장소를 최대 7 근무일까지 폐쇄할 수 있다(제43조).

민사 구제로는 직접적 손해를 입은 권리자가 법원에 침해물과 사용 도구의 압수, 침해 중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 침해물의 제작·유통 경로에 관여한 자에 관한 정보를 법원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제51조), 긴급한 경우 임시 중지와 보전압류도 신청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법원은 침해물의 몰수·폐기를 명해야 한다(제53조 제1항). 침해자는 검찰 송치 전에 SAIP에 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합의금은 벌금 상한의 2배(200만 리얄, 한화 약 7억천만 원)를 넘을 수 없고 침해물 폐기를 포함해야 한다(제56조). 합의는 구속력과 종국적 효력이 있고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며(제57조), 이행하면 형사소송이 소멸하지만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막지 못한다(제58조).

시행규정에 따르면 SAIP 진정은 권리자나 정당한 대리인이 침해가 일어난 때부터 5년 안에 정해진 서식의 기술감정보고서와 함께 제기해야 하고(제64조·제65조), 침해자가 조사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합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제77조). 통관 보류(국경조치)는 ZATCA(조세·관세 당국)가 SAIP와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된 신청은 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남은 보호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신청인이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권리자는 보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안에(최대 10일 연장 가능)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된다(제91조·제93조). 소량의 비상업적 휴대품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제94조).

6) 그 밖의 내용

권리자가 경제적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귀속하며(개정법 제25조), 시행규정은 저작물이나 발행 정보에 그 취지의 명시적 선언이 있는 경우에 포기를 인정한다(제17조 제2항).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과 상속인이 없는 저작물의 권리는 주무기관이 맡으며, 시행규정은 미성년자 재산 후견청(General Authority for the Guardianship of Minors' Funds)을 그 기관으로 정한다(개정법 제20조, 시행규정 제18조). 개정법 제37조 제2항은 제26조~제36조에 없는 이용이라도 비상업적이고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며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으면 허락·보상 없이 허용하고, 시행규정 제23조는 직·간접의 비영리 목적, 저작물의 가치와 정당한 이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재, 저작자·출처 표시, 목적에 필요한 범위라는 요건을 구체화한다. 집중관리단체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경제적 권리의 관리를 단체·회사 등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개정법 제41조)만 있고 시행규정에는 단체의 허가·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 등록은 심사료 납부일부터 60일 안에 결정되며, 등록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시행규정

제53조·제61조). 강제허락은 누구든 SAIP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개정법 제40조), 시행규정은 사우디 국민 또는 주된 사무소가 사우디에 있는 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고(제31조) 비영리 교육·연구 목적의 번역(최초 발행 후 3년 경과)과 복제(과학·기술 저작물 3년, 일반 저작물 5년, 문학·예술 저작물 7년 경과 등)에 한해 허용하며, 허락받은 복제물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제38조·제40조).

3. 의의 및 시사점

첫째, AI 개발 목적 이용 예외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제한을 함께 명문화한 것은 AI 개발과 디지털 유통을 규율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을 보여 준다. 다만 시행규정 제30조의 '필요한 범위', '전적으로 상업적인 맥락', '부당한 손해'는 열린 개념이고 기록의 상세 수준과 보관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SAIP의 추가 지침이 해석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예외를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일반적 자유 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공표·취득의 적법성, 필요한 범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이용 기록의 보존이 전제된다.

둘째, 징역·벌금 상한의 인상, 재범 가중의 필수화, SAIP 합의 절차의 도입으로 침해에 따른 법적 위험이 높아졌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조건부 책임 제한(제49조)과 이용자의 개별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제47조)은 서로 다른 판단 문제이다. 또한 시행규정 제64조는 진정 기한 5년의 기산점을 '위반이 발생한 날'이라고만 하여 계속적 침해의 기산점은 불확실하다.

셋째, 개정법 제18조 제2항과 시행규정 제15조 제2항이 약정 없는 위탁 창작물의 귀속에 관해 달리 읽힐 여지가 있고 시행규정 제22조는 권리자와 관련 사업자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용의 종류·기간·지역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사우디에서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거나 근로계약을 맺는 한국 기업은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AI 생성물의 귀속과 집중관리단체의 허가·운영 체계는 아직 규정이 없다.

참고자료

- 사우디 관보 Umm Al-Qura, 저작권법(아랍어 원문), 2026.2.13. https://www.uqn.gov.sa/details?p=28845
- 사우디 관보 Umm Al-Qura, 저작권법 시행규정(아랍어 원문), 2026.7.31. https://www.uqn.gov.sa/decisions-and-regulations/4001498
- 사우디 관보 Umm Al-Qura, 저작권법 시행규정 승인 결정(아랍어 원문), 2026.7.31. https://www.uqn.gov.sa/decisions-and-regulations/4001497
- WIPO Lex,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보호법(2003, 2018년 개정 통합본). https://www.wipo.int/wipolex/ar/legislation/details/19412
- Baker McKenzie, “Saudi Arabia: New Copyright Law Modernises KSA IP Framework”, 2026.7.20.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26/07/saudi-arabia-new-copyright-law-modernises-ksa-ip-framework
- Latham & Watkins, “Saudi Arabia’s New Copyright Regulations: What AI Companies Should Know”, 2026.9.15. https://www.lw.com/en/insights/2026/09/Saudi%20Arabia%20New%20Copyright%20Regulations%20What%20AI%20Companies%20Should%20Know